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32회 임시회

# 검 토 보 고 서

2019. 7. 23.(화)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구청장
- 제안일 : 2019. 7. 15.
- 회부일 : 2019. 7. 16. (의안번호 : 19 - 87)

###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마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개정을 통해 개최 실적이 저조한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 해외입양인 용어 정의 변경
  - 국내입양기관을 통하여 → 관할구역 내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 비상설 위원회 규정 신설
  -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해산 한 것으로 본다.

- 위원 임기 수정
  - 2년 → 위원회 구성·운영 기간
- 제13조(예우 및 사후관리)제1항 제1호 삭제
  -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 부여
- 용어 순화 및 문장 정비

####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서울특별시 마포구 명예구민증 수여조례」

#### 5. 검토보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최실적이 저조한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해외입양인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비상설 위원회 규정 신설하여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 자동해산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위원 임기는 기존 2년에서 위원회 구성·운영 기간 내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용어 순화 및 문장을 정비하는 내용임.
- 검토의견으로는
  - 명예구민증은 외국인으로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고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 구를 방문하는 외빈, 해외 입양자 등에 수여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해외 입양자에게는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마포구의 국제적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므로, 기 선정된 명예구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명예구민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그 개최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관계법령과의 저촉문제는 없음.